

#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2
----------	----

제출년월일 : 1999. 2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개정사유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투자심사시 공무원 위주의 닫힌행정을 지양하여 지역주민 참여폭을 대폭 확대하므로써 재정운용의 계획성, 건전성제고 및 열린 도정 실현
- 중기재정계획 위주의 현행규정에 투자심사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시
  - 공무원수를 총위원수의 1/3 이내로 제한(안 제2조 제3항)
- 간사의 직위를 격상
  - 주무담당 → 주무과장(안 제2조 제4항)
- 위원회 기능 및 위원회 개최 조항에 "주요사업투자심사"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안 제5조 및 제6조)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동법시행령 제30조의 3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관련법령발췌 : 따로붙임

##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3”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18인”을 “9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며,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도소속 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수는 총위원수의  $\frac{1}{3}$ 이내로 한다. 동조 제4항중 “주무계장”을 “주무과장(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3.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주요사업 투자심사등의 안건이 부의되었을 때 개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